

부산광역시사하구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5조(예고방법) ① 제4조의 입법예고 문은 사하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인 “내고장 사하”에 게재하되, 필요한 경우 이외에 신문, 방송,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예고할 수 있다</p>	<p>제5조(예고방법)①----- ----- ----- 이외에 신문, 방송, <u>컴퓨터 통신</u> 등 이해관계----- ----- -----</p>